

#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404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3월 10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“시장”이라는 용어의 약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, 시장이 처음으로 사용되는 안 제3조에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는 약칭을 명시하고 안 제5조 각 호에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표기된 ‘한류산업등’을 삭제하며(안 제5조) 오탈자를 정비함(안 제9조)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명시함(안 제3조).
- 불필요하게 반복 사용되는 ‘한류산업등’의 용어를 정비함(안 제5조).
- 오탈자를 정비함(안 제9조).

##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‘시장’ 을 ‘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’ 로 한다.

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의 양성
2. 연구개발
3. 지식재산권의 보호
4.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
5.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
6.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안 제9조 중 ‘한류사업등’ 을 ‘한류산업등’ 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(이하 “한류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한류산업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</u></li> <li>2. <u>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</u></li> <li>3. <u>한류산업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</u></li> <li>4. <u>한류산업등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</u></li> <li>5.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</li> <li>6.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</li> <li>7. <u>그 밖에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li> </ol> <p>제9조(포상) 시장은 <u>한류사업등의 진흥에</u>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②(제정안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전문인력의 양성</u></li> <li>2. <u>연구개발</u></li> <li>3. <u>지식재산권의 보호</u></li> <li>4. <u>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</u></li> <li>5.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</li> <li>6.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</li> <li>7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li> </ol> <p>제9조(포상) 시장은 <u>한류산업등의</u> ----- ----- -----</p>

##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한류산업진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다.

**제3조(시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(이하 “한류산업등”이라 한다)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
2.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
3.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4.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(지원사업)**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전문인력의 양성

2. 연구개발

3. 지식재산권의 보호

4.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지원

5.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지원

6. 한류사업자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지원
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6조(민간단체 등 지원 및 육성)** ①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·단체 등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한류산업등 관련 기관이나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중앙정부, 다른

지방자치단체, 기업,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포상)** 시장은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